

2026년 국가R&D 행정제도개선 설명회 추진 계획(안)

(‘26.8.31., 연구제도혁신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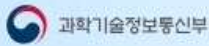
□ 개요

- (목적) 「’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(안)」(‘26.8.26 의결)의 취지 및 주요 내용*을 연구현장에 설명
- * 평가체계 개편(우수과제 인센티브 중심), 무빙타겟 도입, 연구수당 배분 개선 등
- (일시/장소(안)) ’26.9.22(화) 14:00~15:30 / 가톨릭대학교 대강당(300명 규모)
- (참석자)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, 연구제도혁신과장, 산·학·연 연구자 및 전문기관 실무자 등 연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
- (논의내용) ’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연구제도 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, 구체적 제도 적용 과정에서의 고려 사항 등 연구현장 의견 청취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	주요 내용	비고
14:00 - 14:10 (10')	• 인사말씀	평가국장
14:10 - 14:50 (40')	• ’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(안) 설명	제도과장
14:50 - 15:25 (35')	•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	플로어
15:25 - 15:30 (05')	• 마무리	

※ 세부 진행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'26년도 국가R&D 행정제도개선 – 이렇게 달라집니다

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 전환



- 결과중심 등급제·점수제 폐지로 새로운 과제평가체계 필요
 - ☑ **우수과제 선별 + 인센티브로 과제평가 대폭 변경**
 - 우수성과 외 **우수도전 과제**도 우수과제로 선별하여 **후속연구** 등 연계 지원
 - 부적절 과제(불성실, 의무위반 등) **패널티 부여**
- 연구목표 변경 절차·기준 마비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 한계
 - ☑ **무병타겟(Moving Target) 제도 전면 도입**
 - 유연한 연구목표 변경을 위한 **신속 처리절차** 및 **범부처 승인기준**(negative 방식) 도입
- 일률적 기준 및 관리체계 마비로 평가위원 제척·회피 관리 한계
 - ☑ **제척기준 보완 등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 강화**
 - 모호한 **제척·회피기준** **사안별 구체화**
 - **부적절 평가위원 관리 기준 마련**

연구비 집행 자율성 책임성 강화



- 단계평가 지연 또는 정비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중단 우려
 - ☑ **단계 종료 시 잔액 자동이월(필수 인건비 즉시 집행)**
 - ☑ **연구 시설·장비 도입기간 제한 완화**
 - 단계종료 2개월 전 → 과제종료 일정기간 전
-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연구물입 저해
 - ☑ **5천만원 이하 R&D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**
 - 재정부,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신설 추진 중(연내)
 -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세부지침 개정 추진
- 간접비 비율에 대한 불규칙한 고시로 연구 관리비효율성 초래
 - ☑ **간접비 비율 고시 시기 정례화(ex.~12.31)**
 - ☑ **간접비 비율 변경 절차 간소화**
 - 승인 → 통보
-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연구사기 저하
 - ☑ **[현행]+고려할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% 이내**
 - (현행) 총액 상한(전체 인건비의 20% 이내)
 - 배분 상한(1인당 연구수당 총액의 70% 미만)

연구행정 효율성 강화



- 부처별·회계법안별 상이한 정산 규정으로 증빙 등 행정부담 가중
 - ☑ **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 통일**
 -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라인 마련
 - 연구개발비 인정·불인정 사례집 마련
- 단계·연차보고 모두 동일한 연구비 실적 요구로 행정낭비 초래
 - ☑ **연차보고서 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항목 삭제**
 - 단계보고서, 국제공동연구 등은 보고의무 유지
- 시작·종료일과 무관하게 모든 과제의 연차보고서 제출로 행정부담 초래
 - ☑ **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예외 신설**
 - [1차 연도] or [최종 연도]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
 - [차년도] or [최종보고서]에 통합 제출

국제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



- 국제공동연구 연구비사용 관리체계 마비로 성과관리 등 부실
 - ☑ **해외기관의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 강화**
 - [일반형] 해외기관 사용실적 첨부 + 타당성 평가
 - [공동기관형] 국가별 사용기준 제시(혁신법 준수 원칙)
- 연구기관의 전문성·협상력 부족으로 연구성과(IP) 확보 미흡
 - ☑ **국제공동연구 전주기 IP 권리 확보 지원**
 - 공고 시 명확하게 명시 + IP 사전교육 + 전문가 활용 및 컨설팅 지원 + 충분한 IP 협상기간 허용 등